



양도소득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글 | 정태화 세무사

1. 각종 총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자

“총당금”이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데 이때의 상대 항목을 총당금이라 한다. 총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가. 감가상각 총당금 : 고정자산은 시간에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소득세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건물·자동차 등 유형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퇴직급여 총당금 :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총당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다. 대손총당금 : 대손총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총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하여만 비용으로 인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산에 반영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장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 특수 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서울 종로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하였다.

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나. 특수 관계자의 범위 :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당해 거주자 및 그와 ① 내지 ③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⑤ 당해 거주자와 ① 내지 ③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제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하는 있는 법인이다.

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 ① 특수 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②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특수 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부담하는 때
- ④ 특수 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 ⑤ 기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수 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는 시가를 감안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